



제재조치 공지

CBOT 23-1704-BC

발효일: 2024년 9월 27일

문서번호: [CBOT 23-1704-BC](#)

회원여부/회원: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CBOT 규정위반: **규정 538.C. 관련 포지션**

EFRP의 관련 포지션 요소는 반드시 본 거래소 계약의 기초 현물 상품, 부산물, 관련된 상품, 혹은 본 거래소 계약의 기초 상품과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상관 관계를 지닌 상품에 대한 장외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EFRP의 관련 포지션 요소로 선물계약이나 선물계약에 대한 옵션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각 EFRP는 당사자 간에 이뤄진 기초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 혹은 해당 관련 포지션 거래에 적용되는 시장 관행에 따른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필요로 한다. EFRP의 실행이 해당 관련 포지션 거래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시장 리스크 발생 없이 관련 포지션의 상쇄를 초래하는 형태로 다른 EFRP 혹은 관련 포지션의 거래를 조건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EFRP 거래가 실질적 거래가 아님을 아는 일체의 당사자가 그러한 거래 실행에 협력하는 것은 본 규정의 위반이다.

규정 534. 가장매매 금지

그 어떤 사람도 해당 주문의 목적이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는 진실한(*bona fide*)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가장매매나 가장매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불리는 거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만기월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행사가의 풋이나콜 옵션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 리스크나 가격 경쟁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입력한 여러 공동 실소유주 계좌들을 위한 매수, 매도 주문 또한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주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실행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 432. 일반 위반

다음은 위반 행위이다.

W.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직원과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당사자

**조사결과:**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Nomura")가 아래 제재의 근거가 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제시한 합의안에 따라, 2024년 9월 25일, 시카고상업거래소 영업행위위원회 ("CBOT Business Conduct Committee, "위원회")는 Nomura가 2023년 4월 25일에 2023년 6월을 초장기 미국 국채 선물 (Ultra U.S. Treasury Bond 선물) 시장에서 실물 선물 교환 (Exchange for Physical, "EFP") 거래를 실행하였는데, 이 거래는 관련된 실물 포지션의 교환이 없이 선물 포지션의 동시 교환으로 구성되었고, 기초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진실되지 않은 EFP의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Nomura가 공동의 소유권을 가진 계좌 사이에 선물 포지션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Nomura가 위반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는 데에 실패하고, 거래소 규정 및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 (MRANs)의 잠재적 위반을 성립할 수 있는 직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직원을 성실하게 감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Nomura가 CBOT 규정 538.C., 534, 및 432.W.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재내용:

합의안에 따라, 위원회는 Nomura에 \$80,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발효일:

2024년 9월 27일